

춘천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가단320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31201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가단32060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이호섭, 장민후

변론종결 2022. 1. 11.

판결선고 2022. 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와 2021. 4. 2. 접수 제168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1부터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순번 ○ 토지’라 한다) 중, ① 순번 1 토지에 관하여 2016. 5. 9. 피고 앞으로 2012. 3.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2020. 12. 17. 원고 앞으로 2020. 12.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21. 4. 2. 다시 피고 앞으로 2021. 4.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② 순번 2 토지에 관하여 2012. 4. 20. 피고 앞으로 2012. 3.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2020. 12. 17. 원고 앞으로 2020. 12.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21. 4. 2. 다시 피고 앞으로 2021. 4.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③ 순번 3 토지에 관하여 2017. 2. 27. 춘천시 앞으로 2017. 2.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2021. 3. 9. 원고 앞으로 2021.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21. 4. 2. 피고 앞으로 2021. 4.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21. 4. 1.자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2021. 4. 2.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순번 1, 2 각 토지를 증여받았고, 순번 3 토지를 춘천시로부터 매수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인감과 신분증을 도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 단

-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1821 판결 등 참조)
- 2)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등기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